

등록번호	자치행정과-14697
등록일자	2022. 10. 4.
결재일자	2022. 10. 4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교육봉사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
김연희	박태봉	이병철
2022. 10. 4.		
협조		

2022년 2학기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 계획

< 개 요 >

- 대 상
 - 타 자치단체에서 원주시 관내 대학 기숙사 및 거주지로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
- 신청기간
 - 2학기: 2022. 11. 7. ~ 11. 18. ☞기준일 10.18까지 전입신고 완료
- 소요예산: 100백만 원
- 사업내용
 - 학자금 1인당 10만원 지급(학기별)



2022년 2학기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지급 계획

- 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원주시 관내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고
- 지역 역량강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 인구를 확보하고자 함.

1 추진근거

- 주민등록법
-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
-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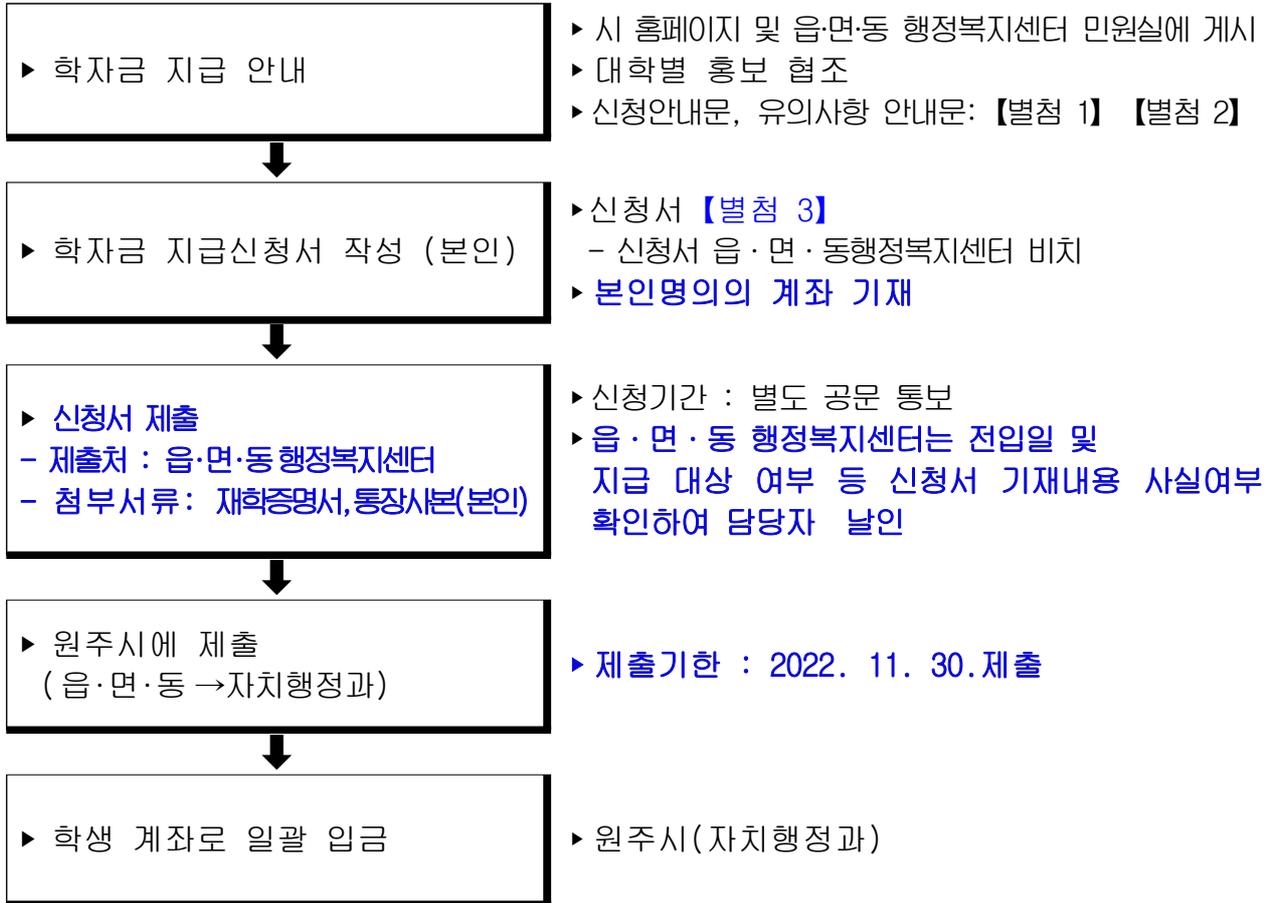
2 추진개요

- 사업비 : 100백만 원
- 대상 : 관내 대학생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원주시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(외국인, 재외국민, 휴학생 제외)
- 사업내용 : 원주시 전입 관내 대학생의 최소한의 학자금(생활비) 1인당 10만원 지급 (학기별)

3 추진계획

- 학자금 신청 기간
 - 2학기: 2022. 11. 7. ~ 11. 18.
 - ☞ 2022. 10. 18.까지 전입신고 완료자

○ 학자금 신청



4 협조사항

○ 공통사항

- **【별첨 2】 주소이전 시 본인에게 불이익 없도록 신중히 판단 후 신청** 토록 안내 및 홍보 철저(거주지 제한 사유 등)

○ 대학교

- **【별첨 1】** 대학교 재학생에게 전입신고 및 신청 홍보

○ 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

- **【별첨 1】** 학자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비치 및 홍보 강화
- 전입신고된 대학생에 한하여 **지급대상 여부 전입일자 확인 검토 및 담당자 날인 후** 학자금 지급신청서 **【별첨 3】** 와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, **【별첨 4】** 학자금 지급신청서 목록 **2022. 11. 30.까지** 제출

○ 관련법률: 아래 참조

1. 「주민등록법」

제6조(대상자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(이하 “거주지”라 한다)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주민”이라 한다)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4. 1. 21.>

제8조(등록의 신고주의 원칙)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. 다만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. <개정 2009. 4. 1., 2019. 12. 3.>[시행일 : 2020. 12. 4.] 제8조 제12조(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) 기숙사,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, 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, 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2. 「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
제6조(인구정책사업)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결혼 지원

2. 임신·출산지원

가. 임신·출산·입양 축하선물 지급

나. 임산부·태아·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

다. 그 밖에 임신·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

3. 임신·출산·양육·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

4. 노인의 여가·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

5.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

6.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

7.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

8.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
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

②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·법인·단체·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3. 「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원주시의 역량강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 인구 확보를 위하여 거주지 이동 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학”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.
2. “대학생”이란 원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구역의 대학 재학생을 말한다.
3. “거주지 이동”이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지인 대학생이 시 관할구역으로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학자금”이란 거주지 이동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.
5. 삭제 <2020. 10. 8.>

제3조(지원 대상 및 기준) 원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거주지 이동을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.

[본조전문 개정 2020. 10. 8.]

제4조(지원신청 및 절차) ① 학자금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숙사로 거주지 이동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해당 대학의 장이 취합하여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8.>
2.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·면·동장은 관련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23., 2020. 10. 8.>
-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다. <개정 2020. 10. 8.>
-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학자금 및 장학사업비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다.
- ④ 지원신청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와 해당 대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끝.